|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8호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및그 실시세칙 등 유관법률법규 및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2020년)>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하여,<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재량권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국세발[2012]65호)요구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11월 30일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행정처벌재량권행사를 규범화 하고,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세무와 관련된 당사자(이하‘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 법규유관규정과 <법치정부건설실시요강(2015-2020년)>,<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재량권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이 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할 경우,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칙에서 일컫는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은,세무기관이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근거세수위법행위의 사실, 성질,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종류와 정도를 선택하고 처벌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말한다.  제4조 세무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벌금  2. 위법소득몰수및 불법재물몰수  3. 수출퇴세(환급)권한 정지  4.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행정처벌  제5조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하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합법원칙.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종류와 정도 내에서, 법정권한에 따라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2. 합리원칙. 입법목적에 부합하고,유관 사실요소와 법률요소를 고려하며, 행정처벌결정과 위법행위의 사실, 성질, 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가 상호 적합하고, 현지의 경제사회발전수준에 적합하다.  3. 공평공정원칙. 사실, 성질, 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 등 요소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벌종류와 정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4. 공개원칙.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근거와 행정처벌정보를 공개한다.  5. 절차정당성 원칙.법에 의거 당사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및 구제권 등 각종 법정권리를 보장한다.  6. 신뢰보호원칙. 법정사유가 아니고 또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7. 처벌과 교육의 상호결합원칙. 세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며, 당사자가 자각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  제2장 행정처벌재량기준제정  제6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세무기관이 행정처벌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한 세분화되고 계량화된 표준이다.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위법행위, 처벌근거, 재량등급,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법정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또한 이하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률, 법규, 규장이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행정처벌의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법률, 법규, 규장에서 행정처벌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법률, 법규, 규장에서 행정처벌 정도를 규정한 경우 사실, 성질, 사건의 경위 및 사회적 피해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4. 법률, 법규, 규장규정이 단일 및 여러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경우,단일 또는 여러 행정처벌의 적용조건과 구체적인 표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제정할 때,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1. 행정처벌재량근거를 확인한다.  2. 행정처벌의 전형적인 사례를 정리 및 분석하고,세무행정처벌재량권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참고로 제공한다,  3. 행정처벌재량권을 세분화하고 계량화하며,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입안한다.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은 규범성 문건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세수행정 법집행과 결합시켜 현실적으로 적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 성(省)국세국 및 지세국은 해당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연합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법률, 법규, 규장을 근거로 하여 재량기준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행정처벌결정을 내려야 하며, 단독으로 세무행정처벌재량기준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3장 행정처벌재량규칙적용  제11조 법률, 법규 규장에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당사자가 최초로 위반하였고 사건의 경위가 경미하고, 세무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시정하였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을 내린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세무기관이 당사자에게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 경우, 법률, 법규, 규장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3조 당사자의 동일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벌금의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일한 세수위법행위가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모두 벌금형을 내려야 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이 비교적 무거운 조항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아래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1.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또한 적시에 시정하여,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2. 만 14세 이하의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정신병 환자가 판단불능 또는 자기행위 통제불능 시점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법률에서 행정처벌을 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  제15조 당사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법에 의거 행정처벌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  1. 주동적으로 위법행위의 위해결과를 해소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세무기관에 협력하여 위법행위 조사에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 경우  4. 기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경감하여야 할 경우  제16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고 5년 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  제17조 세무행정처벌재량권 행사는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당사자에게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 및 예정된 처리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또한 당사자가 법에 의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의 세무행정처벌재량권 행사가법정회피 정황과 연관된 경우, 법에 의거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세무직원에게 법정회피정황이 존재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세무기관이 회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세무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고, 그 제출된 사실과 이유 혹은 증거에 대하여 재심리하여, 진술변론사유가 성립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채택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세무기관은 당사자 변론을 원인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제22조 세무기관이 공민(시민)에게 2,000위안 이상의 벌금 또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1만 위안 이상 벌금의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공청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제21조 사건경위가 복잡하고, 논쟁이 비교적 심하고,처벌이 비교적 무겁고, 영향이 비교적 광범위하거나 처벌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의 세무행정 처벌안건에 대해서는 집단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일반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법집행 문서에서 사실인정, 법률적용과 기준적용 등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성(省)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사례지도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례지도를 통해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24조 각급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업무 지도팀이 세무행정처벌재량권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5조 국세기관 및 지세기관은 법집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정보교환과 법집행 합작메커니즘을 완전하게 구축하고, 동일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수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제26조 각급 세무기관은 정보화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무행정처벌재량권의 관리를 강화하고, 단계별 통제를실현하여 재량행위를 규범화 하여야 한다.  제27조 각급 세무기관은 법집행과 감찰, 문서평가 등의 방식을 통해 행정처벌재량권 업무 규범화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税务行政处罚裁量权行使规则》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78号  　　为全面贯彻《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等有关法律法规及《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年）》精神，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规范税务行政裁量权工作的指导意见》（国税发〔2012〕65号）要求，国家税务总局制定了《税务行政处罚裁量权行使规则》，现予以发布，自2017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6年11月30日  税务行政处罚裁量权行使规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税务行政处罚裁量权行使，保护纳税人、扣缴义务人及其他涉税当事人（以下简称“当事人”）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等法律、法规有关规定，以及《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年）》《国家税务总局关于规范税务行政裁量权工作的指导意见》要求，制定本规则。  　　第二条 税务机关行使行政处罚裁量权，适用本规则。  　　第三条 本规则所称税务行政处罚裁量权，是指税务机关根据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综合考虑税收违法行为的事实、性质、情节及社会危害程度，选择处罚种类和幅度并作出处罚决定的权力。  　　第四条 税务行政处罚的种类包括：  （一）罚款；  （二）没收违法所得、没收非法财物；  （三）停止出口退税权；  （四）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其他行政处罚。  　　第五条 行使税务行政处罚裁量权，应当遵循以下原则：  （一）合法原则。在法律、法规、规章规定的种类和幅度内，依照法定权限，遵守法定程序，保障当事人合法权益。  （二）合理原则。符合立法目的，考虑相关事实因素和法律因素，作出的行政处罚决定与违法行为的事实、性质、情节、社会危害程度相当，与本地的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  （三）公平公正原则。对事实、性质、情节及社会危害程度等因素基本相同的税收违法行为，所适用的行政处罚种类和幅度应当基本相同。  （四）公开原则。按规定公开行政处罚依据和行政处罚信息。  （五）程序正当原则。依法保障当事人的知情权、参与权和救济权等各项法定权利。  （六）信赖保护原则。非因法定事由并经法定程序，不得随意改变已经生效的行政行为。  （七）处罚与教育相结合原则。预防和纠正涉税违法行为，引导当事人自觉守法。  第二章 行政处罚裁量基准制定  　　第六条 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是税务机关为规范行使行政处罚裁量权而制定的细化量化标准。  　　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应当包括违法行为、处罚依据、裁量阶次、适用条件和具体标准等内容。  　　第七条 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应当在法定范围内制定，并符合以下要求：  （一）法律、法规、规章规定可予以行政处罚的，应当明确是否予以行政处罚的适用条件和具体标准；  （二）法律、法规、规章规定可以选择行政处罚种类的，应当明确不同种类行政处罚的适用条件和具体标准；  （三）法律、法规、规章规定行政处罚幅度的，应当根据违法事实、性质、情节、社会危害程度等因素确定适用条件和具体标准；  （四）法律、法规、规章规定可以单处也可以并处行政处罚的，应当明确单处或者并处行政处罚的适用条件和具体标准。  　　第八条 制定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参照下列程序进行：  （一）确认行政处罚裁量依据；  （二）整理、分析行政处罚典型案例，为细化量化税务行政处罚裁量权提供参考；  （三）细化量化税务行政处罚裁量权，拟定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  　　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应当以规范性文件形式发布，并结合税收行政执法实际及时修订。  　　第九条 省国税局、地税局应当联合制定本地区统一适用的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  　　第十条 税务机关在实施行政处罚时，应当以法律、法规、规章为依据，并在裁量基准范围内作出相应的行政处罚决定，不得单独引用税务行政处罚裁量基准作为依据。  第三章 行政处罚裁量规则适用  　　第十一条 法律、法规、规章规定可以给予行政处罚，当事人首次违反且情节轻微，并在税务机关发现前主动改正的或者在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的期限内改正的，不予行政处罚。  　　第十二条 税务机关应当责令当事人改正或者限期改正违法行为的，除法律、法规、规章另有规定外，责令限期改正的期限一般不超过三十日。  　　第十三条 对当事人的同一个税收违法行为不得给予两次以上罚款的行政处罚。  　　当事人同一个税收违法行为违反不同行政处罚规定且均应处以罚款的，应当选择适用处罚较重的条款。  　　第十四条 当事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行政处罚：  （一）违法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  （二）不满十四周岁的人有违法行为的；  （三）精神病人在不能辨认或者不能控制自己行为时有违法行为的；  （四）其他法律规定不予行政处罚的。  　　第十五条 当事人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依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  （一）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的；  （二）受他人胁迫有违法行为的；  （三）配合税务机关查处违法行为有立功表现的；  （四）其他依法应当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的。  　　第十六条 违反税收法律、行政法规应当给予行政处罚的行为在五年内未被发现的，不再给予行政处罚。  　　第十七条 行使税务行政处罚裁量权应当依法履行告知义务。在作出行政处罚决定前，应当告知当事人作出行政处罚决定的事实、理由、依据及拟处理结果，并告知当事人依法享有的权利。  　　第十八条 税务机关行使税务行政处罚裁量权涉及法定回避情形的，应当依法告知当事人享有申请回避的权利。税务人员存在法定回避情形的，应当自行回避或者由税务机关决定回避。  　　第十九条 当事人有权进行陈述和申辩。税务机关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意见，对其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进行复核，陈述申辩事由成立的，税务机关应当采纳；不采纳的，应予说明理由。  　　税务机关不得因当事人的申辩而加重处罚。  　　第二十条 税务机关对公民作出2000元以上罚款或者对法人或者其他组织作出1万元以上罚款的行政处罚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当事人要求听证的，税务机关应当组织听证。  　　第二十一条 对情节复杂、争议较大、处罚较重、影响较广或者拟减轻处罚等税务行政处罚案件，应当经过集体审议决定。  　　第二十二条 税务机关按照一般程序实施行政处罚，应当在执法文书中对事实认定、法律适用、基准适用等说明理由。  　　第二十三条 省税务机关应当积极探索建立案例指导制度，通过案例指导规范税务行政处罚裁量权。  第四章 附 则  　　第二十四条 各级税务机关依法行政工作领导小组应当加强规范税务行政处罚裁量权工作的组织领导。  　　第二十五条 国税机关、地税机关应当强化执法协作，健全信息交换和执法合作机制，保证同一地区对基本相同的税收违法行为的行政处罚基本一致。  　　第二十六条 各级税务机关应当积极运用信息化手段加强税务行政处罚裁量权的管理，实现流程控制，规范裁量行为。  　　第二十七条 各级税务机关应当通过执法督察、案卷评查等方式，对规范行政处罚裁量权工作进行监督。  　　第二十八条 本规则自2017年1月1日起施行。 |